

서울고등법원 2024. 4. 5 선고 2022나201205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4. 5 선고 2022나201205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19가합706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영우, 이눈솔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큰솔

담당변호사 박요찬

피고, 피항소인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큰솔

담당변호사 박요찬

변론 종결2024. 1. 19.

판결 선고2024. 4. 5.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19가합706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추가된 각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3,518,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24. 4. 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초과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반환청구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초과지급한 추가공사대금 반환청구, 공사대금 감액 반환청구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사이의 각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1) 502,518,915원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선정당사자)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 C은 502,518,915원,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58,518,91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및 선정자 주식회사 D(이하 '선정자'라 하고, 위 각 회사를 통칭할 때는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는 원고 A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원고 A 지분 65%, 선정자 지분 35%)를 구성하여, 2016. 10. 7.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서울 중구 F 소재 'G' 신축공사를 수급 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 3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2,7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각 공사대금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한다)에 하도급 주었다가 중도에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2018. 3.경 위 하도급 기성공사대금을 1,824,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2.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E이 하였던 토목공사 중 잔여공사'와 '추가적인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1,943,000,000원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위 공사는 크게 지하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 EGR 설치공사, 부대토목공사로 분류된다. 다만 발주처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 관계를 고려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토목 잔여공사'3)에 관한 '전자계약서'(계약금액 1,341,000,000원, 갑 제40호증의2, 을 제1호증의1, 2)와 '토목 추가공사'4)에 관한

'수기계약서'(계약금액 602,000,000원, 갑 제41호증, 을 제2호증의1, 2)로 나누어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기사항을 부기하였다(아래 특기사항 제1, 2항은 전자 및 수기계약서 모두에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 제3, 4, 5항은 수기계약서에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상 전자 및 수기계약서 모두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특기사항

1. 지하층 터파기 2018. 7. 15. 완료 및 T/C 설치 전 지하층 내부 철근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백호 지원, 지상부 자재인양 등을 위한 크람셀 지원 조건
2. 본 계약금액은 모든 설계변경(예정사항 등) 및 물가연동을 반영한 금액으로 준공정산(추가 변경) 없음(단, 설계변경 시행으로 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는 협의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3. 지하층 암발파공법 및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과다한 도급금액 감액이 예상되고 있지만, 토목잔여공사를 당사(피고 C)이 승계계약하면서 손실보전 명목으로 본 품목들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원수급자(원고)의 도급금액 감액이 최소화되도록 책임지고 발주처 설계변경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확인 및 확약하고, 만약 위 품목(가시설공사 중 토공)의 도급금액이 과다하게 감액될 경우 당사(피고 C)이 승계계약하기 전 당초(E) 하도급금액과 당사(피고 C)의 승계계약내역서의 차액(증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피고 C)은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익을 원수급자(원고)에게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이 사건 신축공사의 '토목 잔여공사' 당사(피고 C) 계약 총액은 1,943,000,000원이며, 본 금액은 준공시까지 설계변경예정을 모두 반영한 관계로, 하도급관련법에 도급설계변경이전에 하도급설계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본 하도급계약에 대한 발주처 통보를 하기 위해 총 계약금액 및 계약조건은 변경 없이 품목별 도급수량기준 E의 정산수량을 제외한 잔여수량으로 작성한 계약내역은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추가공사 관련 신규 품목 및 도급내역 수량 초과품목으로 작성한 계약내역은 수기문서계약으로 하여 총 2건의 토목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5. 수기문서로 체결하는 계약 건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원수급자(원고)와 당사(피고 C)은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피고 C은 2018. 8.경 '추가' 공사대금으로 5억 9,000여만 원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8. 9. 21. 아래와 같이 합의한 후(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가 2018. 10. 1. 피고 C에게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

1. 합의당사자: 원고5) (갑), 피고 C(을), 피고 B(피고 C의 연대보증인, 병)

2. 합의 사건: 이 사건 공사(G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3. 합의 내용

가. 합의 사건 공사 관련 피고 C의 추가공사비 청구금 330,000,000원(내역첨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은 다툼이 있는바, 원고는 공사기간의 촉박함으로 인해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 C에게 가지급 명목으로 우선 지급하되, 추후 원고와 피고 C은 상호 신뢰로써 협의하되 합의 불성립 시 법원재판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돈으로 확정하고 추후 초과지급된 돈은 피고 C이 이를 반환하기로 함.

나. 위 합의 사건 공사 관련 추가공사비는 위 가항으로 확정되며, 이후 어떠한 추가공사비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

다. 위 가.항의 피고 C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에 대해 피고 B은 연대하여 보증함.

마. 그 후 피고 C은 2018. 11. 16. 원고에게, '제7회 기성공사대금'으로 451,000,000원6) 을 주장하면서 위 금액에서 선급금 잔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09,000,000원을 청구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29.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C의 공사 지연, 계약 외 추가금액 요구 및 피고 C의 전무라고 주장하는7) 피고 B의 지시에 의한 다른 공사방해,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대여 의혹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

사.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9. 9. 30. 해지되었다.

아. 한편,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은 총 1,793,430,000원8) 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4, 40, 41호증, 을 제1, 2, 8, 9, 12, 24, 28, 4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초과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반환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B에 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피고 C의 명의를 차용한 피고 B와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기성공사대금으로 1,793,43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당시 적정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1,688,797,310원9) 이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와 같이 초과지급한 기성공사대금(위 각 금액의 차액) 104,632,6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에 대한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상법 제24조10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B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104,632,6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 사이의 명의대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피고 C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104,632,6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당심에서 이 부분 예비적 청구가 추가되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0행부터 제6면 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이 부분 중 '피고 회사'는 '피고 C'로, '원고들'은 '원고'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793,4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다툼 없는 사실), 제1심 감정인 J(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86.917%이고, 그에 따라 산정한 기성고 금액은 1,688,797,3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104,632,690원(= 1,793,430,000원 - 1,688,797,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 5. 3.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 C은, 감정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만 의존하여 감정하였으며 피고 C이 제출한 자료는 반영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1,943,000,000원임에도 전체공사비를 4,488,941,252원으로 감정하는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감정인의 이 사건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중 지상층 부대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100% 완공하여 그 기성고율이 93.5%에 이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21. 10. 13.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내세우는 사정 및 을 제47, 49호증 등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감정인은 '감정 당시 이 사건 도급계약이 발주처로부터 타절되어 현장접근이 불가능하므로, 2020. 10. 14. 원고와 피고 C이 참석하여 착수회의를 하고 현장조사는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부득이 양측으로부터 감정항목에 대한 설명 및 적시를 받고 제출 자료를 받아 양측 주장에 근거하여 감정을 진행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위 착수회의를 한 시점의 현장은 이미 지상 3층의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원고와 피고 C에게 도면 및 사진 등 현장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피고 C은 별도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공정사진 및 도면,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산출되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며, 위와 같은 감정방법과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수량을 확정하고 이 사건 공사중단시점의 시중물가자료 내지 계약서상 가격을 적용하여 기시공 부분 소요된 공사비를 4,488,991,252원으로,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675,702,458원으로 각 산정하여, 위 합산액 대비 위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의 비율을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로 산출하였다. 위와 같은 감정 당시의 상황과 기성고 산출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의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아 취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한편,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93.5%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을 제53, 54호증11)을 교부받은 점, 발주처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당시 이 사건 공사범위인 지하터파기 공사의 미시공을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이 93.5%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주장하는 기성고율 산정 방식을 적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감정인은 피고 C이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 부분에도 미시공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그중 흙막이공사 부분에 소요될 직접공사비가 277,366,270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은 점(감정인의 감정결과 82~83면1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2019. 1. 29. 이후부터 발주처와의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2019. 9. 30.까지 사이에 원고가 직영 내지 다른 업체를 통해 가시설 해체공사를 하는 등 일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도 보이므로(갑 제29 내지 32호증),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공사의 미시공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피고 C이 지하층 공사를 완공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의 위 공사완료 내지 기성고율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초과지급한 추가공사대금 반환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주장 및 피고 C에 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아래 표 '원고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추가공사비로 33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되, 추후 초과지급된 돈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추가공사비를 지급했어야 할 것으로 인정하는 추가공사내역은 아래 표(다음 장에 기재) '원고 인정금액'(순번1, 11, 12, 15)란 기재와 같이 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불과하다.

1	B1 자재정리	1,000,000	1,000,000
2	B1 거푸집해체1	500,000	불인정
3	B1 거푸집해체2	500,000	
4	B1 철근절단1	500,000	
5	B1 철근절단2	500,000	
6	B1 보받이받침대절단	500,000	
7	B2~4 로드바삽입구설치	7,000,000	
8	B2 서포트바닥토공	1,000,000	

1	B1 자재정리	1,000,000	1,000,000
9	B1~4 간섭부절단	500,000	
10	B3 벽체보반이제작설치	3,000,000	
11	저소음 뿌레카 사용료	5,000,000	5,000,000
12	B3 EGR용접사 공상처리비	5,000,000	5,000,000
13	I 구조계산	5,000,000	불인정
14	7, 8월 추가투입비	230,000,000	
15	벽체브라켓 해체비	10,000,000	10,000,000
16	H형강 손료	30,000,000	불인정
합계	300,000,000	21,000,000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이 사건 합의의 실질 당사자인 피고 B 및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C13에게 연대하여 초과지급한 추가공사대금 상당의 309,000,000원(= 330,000,000원 ~ 21,000,000원¹⁴)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주장 예비적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초과지급한 추가공사대금의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 B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6행부터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이 부분 중 '피고 회사'는 '피고 C'로, '원고들'은 '원고'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초과지급 인정 부분 원고와 피고들이 2018. 9. 21. 이 사건 합의로, 위 표 기재 '추가공사내역'에 관하여 '원고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공사내역별로 가지급할 공사금액(조정금액)을 정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합계 3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만 추후 정산하여 초과지급된 돈이 있는 경우 피고 C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B이 위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6호증, 을 제9,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초과지급한

추가공사대금이 존재할 경우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추가공사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 표의 '추가공사내역' 중 순번7(B2~4 로드바삽입구설치) 및 순번10(B3 벽체보반이제작설치)항목은 이 사건 공사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C은 위 표 '추가공사내역' 중 순번16(H형강 손료) 항목은 '당초보다 66.81톤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이나 피고 C이 사용한 H형강의 물량은 오히려 5.144톤 감소한 사실(감정인의 감정결과 35~37면)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순번7, 10, 16 항목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C에 지급한 돈 합계 44,000,000원(위 인정 항목의 원고 지급금액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10% 반영)은 그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이므로 초과지급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은 감정인이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도면을 근거로 위와 같이 감정하였으므로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시한 도면이 허위라거나 감정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초과지급 불인정 부분 그밖에 갑 제9호증, 갑 제25, 26, 2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항에서 인정한 44,000,000원 외에도 원고가 피고 C에게 초과지급한 추가공사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표 '추가공사내역' 중 순번14(7, 8월 추가투입비) 항목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제1항에 따라 지하층 터파기 공사는 2018. 7. 15.에 완료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장비 임대료나 인건비는 피고 C의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부담할 비용이 아니고 위 항목 중 현장관리비 및 본사 관리비의 경우는 원고가 이를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0, 21, 35, 37, 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차량이나 기중기를 세워 놓아 다른 공사장비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긴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갑 제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 B의 공사방해행위 이외에도, 토공 굴착공사에 관한 민원제기, 지열배관

공사 진행, EGR 로드바 및 정반의 해제 지연, 레미콘 수급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일정보다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추가투입비가 원고 주장의 위 2018. 7. 15.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거나 위 피고의 공사 진행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위 항목에 관한 장비 임대료나 인건비, 현장관리비 및 본사관리비 등의 추가투입비를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전혀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위에서 초과지급된 것으로 인정하는 추가공사대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 5. 3.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2. 1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도급공사대금 감액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 감액 반환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B에 대한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특기사항 제3항은, 발주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하층 암발파공법 및 사토운반거리'에 관한 도급금액을 감액할 경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증액하여 준 E의 하도급금액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금액과의 차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항목에 관한 도급금액 중 453,430,418원을 감액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도 252,791,646원(= '암발파공법 및 사토운반거리'와 관련된 E의 하도급금액 단가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단가와 차액 151,019,376원 + 물량추가 형식으로 증액하였던 101,772,27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특기사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B에게 위 252,791,646원 중 일부청구로서 88,886,22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에 대한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B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88,886,22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 사이의 명의대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C에게 위 88,886,22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당심에서 이 부분 예비적 청구가 추가되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2행부터 제10면 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이 부분 중 '피고 회사'는 '피고 C'로, '원고들'은 '원고'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으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제3항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의 감액 여부 가) 갑 제40, 4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2024. 1. 12.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제3항에서, '지하층 암발파공법 및 사토운반거리의 변경'에 따라 위 품목의 도급금액이 과다하게 감액될 경우, '피고 C이 승계계약하기 전 당초(E) 하도급금액과 피고 C의 승계내역서의 차액(증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원고는 2019. 1. 21.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하층 암발파공법 및 사토운반거리 등을 변경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559,491,000원 감액하였는데 그중 '지하층 암발파공법 및 사토운반거리 변경'으로 감액된 도급금액은 직접공사비를 기준으로 274,136,612원¹⁵⁾인 사실, ③ 한편 위와 같은 변경 이전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발파암 굴착 및 상차와 사토운반(L=37.2km)' 항목의 직접공사비는 1,170,612,658원¹⁶⁾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제3항에서 정한 '지하층 암발파공법 및 사토운반거리 변경'으로 도급금액 감액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같은 항목에 관한 변경 전 도급금액(위 1,170,612,658원)에서 위 274,136,612원이 감액된 것은 '도급금액이 과다하게 감액'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특기사항 제3항에 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감액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C이 2018. 7. 5. 이미 지하 터파기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 주장의 지하층 암발파공법 및 사토운반거리 변경은 2019년경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완료한 공사에 관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진 설계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제3항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설계변경 시기와 공사대금 감액 시기, 피고 C의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미 도급금액 감액이 예상되고 있음을 이유로 추후 실제로 도급금액이 감액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도 감액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이어서 시기적 제한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감액의 범위 가) '피고 C이 승계계약하기 전 당초(E) 하도급금액과 피고 C의 승계계약내역서의 차액(증액)'의 의미

(1) 앞서 본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제3항의 문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C은 지하층 암발파공법 및 사토운반거리의 변경에 따른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의 감액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위 조항을 둔 점, ② 위 조항은 각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간의 차액이 아니라, 각 하도급계약 '내역서' 간의 차액을 감액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도 '하도급계약 내역서'에서 정한 '단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의 감액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정방식에 대하여 피고 C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기사항 제3항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한 '피고 C이 승계계약하기 전 당초(E) 하도급금액과 피고 C의 승계계약내역서의 차액(증액)'이라 함은, "지하층 암발파공법 및 사토운반거리 변경과 관련된 항목에 관하여, 'E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내역서의 단가'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서의 증액된 단가' 간의 차액에, 각 해당 항목에 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서의 물량을 곱한 금액"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수기계약서를 통하여 흙막이공사 중 토공 부분¹⁷의 물량을 추가하였으므로, 위 토공 부분의 공사대금이 전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0,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수기계약서상 토공 부분은 모두 E의 기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었던 항목에 해당하므로(갑 제40호증의1 31면, 갑 제41호증 36면), 위 토공 부분의 물량 전부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위 토공 부분 중 E의 하도급계약상 단가와 피고 C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단가에 차액(증액)이 발생한 부분만 감액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전부 감액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제3항에 의해 감액되는 하도급공사대금의 '차액(증액)'은 '직접공사비'에 4.95%의 일반관리비를 가산한 금액에다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23. 10. 11.자 준비서면 4~5면). 그런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총괄원가계산서(갑 제40호증의2 17면, 갑 제41호증 35면)에는 일반관리비의 비율이 4.95%로 되어 있으나 실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상 일반관리비의 산정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간접공사비에 관하여는 별달리 감액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감액되는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직접공사비에 일반관리비나 간접공사비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직접공사비'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원고가 감액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나) 지하층 암발파공법 변경에 따른 감액

(1)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2024. 1. 12.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하층 암발파공법을 당초 '유압식할암', '미진동파쇄기', '정밀진동제어발파'로 정하였다가, '정밀진동제어발파+크람셀'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E이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위 공법변경과 관련된 항목은 '발파암 굴착 및 상차' 항목으로서, 갑 제40,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구체적인 단가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발파암 굴착 및 상차	① 유압식할암	5,033	22,000	5,033	22,000
② 미진동파쇄기	11,743	25,000	7,505	25,000	
③ 정밀진동제어발파	4,925	23,300	1,633	33,000	

이에 의하면, 지하층 암발파공법과 관련된 항목에 관하여 감액되어야 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중 직접공사비는 15,840,100원이 되고[계산근거: 위 표 중 증액된 항목인 ③ 정밀진동제어발파 단가 차액 9,700원(= 33,000원 - 23,300원) × 이 부분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수량 1,633m³], 위 금액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면, 감액되는 이 부분의 총 하도급대금은 17,424,110원이 된다.

(2) 그밖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수기계약서에 기재된 '풍화암굴착 및 상차(H=5.0m 이하)' 항목은 지하층 암발파공법 변경 등과 직접 관련된 부분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원고 역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지하층 암발파공법 변경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고, 물량추가 부분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관련된 원고의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감액

(1)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토운반거리를 당초 37.2km(수도권매립지)로 정하였다가 13.2km(고양시 소재 K)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E이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위 공법변경과 관련된 항목은 '사토운반(L=37.2km)' 항목으로서, 갑 제40,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구체적인 단가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토운반	① 풍화암, L=37.2km	3,108	13,000	1,523	15,000
② 연암, L=37.2km	11,608	6,500	5,298	15,000	
③ 보통암, L=37.2km	10,092	6,500	10,092	15,000	

이에 의하면, 사토운반거리와 관련된 항목에 관하여 감액되어야 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중 직접공사비는 133,861,000원이 되고[계산근거: ① (15,000원 - 13,000원) × 1,523m² + ② (15,000원 ~ 6,500원) × 5,298m² + ③ (15,000원 - 6,500원) × 10,092m²], 위 금액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면, 감액되는 이 부분의 총 하도급대금은 147,247,100원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C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사토운반거리를 13.2km로 정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사토운반거리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감액은 받아들일 수 없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제3항의 문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지하층 암발파공법 및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라 이 사건 도급금액이 과다하게 감액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E의 기존 하도급계약 단가보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단가를 증액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정하되, 이후 위 품목에 관한 도급금액이 과다하게 감액될 경우에는 '증액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단가를 E의 하도급계약상 단가(즉 증액하기 전 단가)로 환원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특기사항 제3항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지하층 암발파공법 및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관하여 이 사건 도급금액이 감액된 이상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증액된 단가와 종전 E의 하도급계약상 단가의 차액'만큼은 그 공사대금이 감액되는 것이 위 약정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 C은 사토운반거리에 관하여는 '운반거리'를 13.2km로 확정하여 단가를 정하였기 때문에 그 운반거리 변경을 이유로 인한 감액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운반거리 변경을 이유로 한 감액이 불가하다는 위 주장은 위 특기사항 제3항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또한 위 문언상 '각 단가의 차액'을 비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운반거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단축·변경된 거리 등을 따져 공사대금 감액을 하여야 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설령 피고 C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문언과 같이 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사토운반과 관련된 부분은 22,845,000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지하층 암발파공법 및 사토운반거리에 관한 도급금액 감액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252,791,646원이나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0호증의2,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주장하는 22,845,000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수기계약서에 기재된 사토운반(풍화암, L=37.2km) 항목에 관한 직접공사비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토운반과 관련된 부분은 그

외에도 연암, 보통암에 관한 항목도 있으며 그에 관한 직접공사비는 2억 3,000여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특기사항 제3항에 기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감액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은 164,671,210원(= 지하층 암발파공법 변경 17,424,110원 + 사토운반거리 변경 147,247,100원)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88,886,2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 5. 3.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5. 결론

가. 앞서 본 각 청구의 결론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초과지급된 추가공사대금 반환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금으로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22. 2. 11.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193,518,915원(= 초과지급된 기성공사대금 부당이득금 104,632,690원 + 하도급 공사대금 감액 반환 인정금액 164,671,210원 중 원고가 구하는 88,886,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24. 4. 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초과지급한 추가공사대금 반환'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초과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반환' 및 '하도급 공사대금 감액 반환'의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각 반환청구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초과지급한 추가공사대금 반환청구 및 위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위 각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관한 부분을 주문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강승준

판사김민아

판사양석용

별지

1)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주식회사 D에게'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선정당사자)가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도 미치므로, 주문과 청구취지 등에서는 '원고(선정당사자)'로만 기재한다.

2) 이 사건 청구취지 금액은, 원고(선정당사자)의 ① 초과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반환청구 104,632,690원, ② 이 사건 합의에 기해 지급한 추가공사대금 중 초과지급한 추가공사대금 반환청구 309,000,000원, ③ 발주처의 도급 공사대금 감액에 따른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감액 반환청구 88,886,225원의 각 청구금액을 합한 것이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위 ①항 및 ③항 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C에 대하여 제1심에서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만을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주장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변경하고, 위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3) 위 전자계약서 내역서상 '토목 잔여공사'는 아래의 공사로 구성되어 있다.

1. 부대토목공사 (하부항목: 토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공, 포장공, 운반공)
2. 흙막이 공사 (하부항목: 토공, 흙막이공, C.I.P공, EGR공, 운반 및 부대공, 자재 및 손료)

4) 위 수기계약서 내역서상 '토목 추가공사'는 아래의 공사로 구성되어 있다.

2. 흙막이 공사 (하부항목: 토공, 흙막이공, 운반 및 부대공, 자재 및 손료)
3. 추가공사비 [하부항목: 외부반입토 토사정리, 자동화추가계측, 건축브라켓설치, 건축장비지원(지하충돌조공사기간+작업대기), EGR설치 시공비 등]

5) 합의서에는 '피고 A'로 되어 있으나, 공동수급체의 성격상 구분할 실익은 없어 보인다.

6) 위 451,000,000원은, 피고 C 작성의 제7회 기성공사대금에 관한 총괄원가계산서(을

제24호증의3)에 의할 때, 흙막이공사의 직접공사비 68,885,924원과 추가공사비 항목(벽체브라켓해체비, EGR기술료, 추가계측비, H형강손료)의 직접공사비 328,000,000원의 합계액에 간접공사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총 공사비이다.

7) 피고 B은 2018. 12. 31.까지 E의 전무이사로도 재직하였다고도 주장하였다.

8) 원고는 위 금액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C도 이에 대해 다툼이 없다. 위 금액은 을 제44호증의 기재 피고 C 수령액 합계 2,123,430,000원에서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이 사건 합의 지급금 33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9) 이는 제1심 감정인 J의 기성고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이고, 원고는 기성고 공사대금을 당초 소장에서 갑 제10호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근거로 1,608,811,085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위 감정결과에 따라 위 금액으로 최종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원고 2022. 11. 10.자, 2023. 6. 21.자 각 준비서면 등 참조).

10)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1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 22. '선급금 지급보증' 및 '계약보증'에 관한 각 보증이행완료확인원을 발급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 C은 위 각 확인원에 기재된 각 보증금액 대비 소멸된 선급금 및 계약보증금의 비율 평균이 약 93.5%인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기성고율도 위 비율로 주장하고 있다.

12) 전자기록을 기준으로 면수를 표시하고, 이하에서도 같다.

13) 이 부분 '초과지급한 추가공사대금 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만을 구하고 있을 뿐,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은 청구하고 있지 않다.

14) 위 21,000,000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나 원고가 구하는 계산방식대로 금액을 기재한다. 원고는 위 표 기재 '원고 인정금액'을 11,000,000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 21,000,000원으로 최종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15) [계산근거] 지하층 암발파공법 변경 196,429,663원 + 사토운반거리 변경 77,706,949원(위

사실조회결과 12면)

16) [계산근거] '발파암 굴착 및 상차 항목' 744,502,190원(= 유압식 할암 152,816,979원 +

미진동 파쇄기,크람셀 442,147,436원 + 정밀진동제어발파 149,537,775원) + '사토운반

L=37.2km 항목' 426,110,468원[= (풍화암, L=37.2km) 45,752,868원 + (연암, L=37.2km)

203,465,024원 + (보통암, L=37.2km) 176,892,576원](위 사실조회결과 196면)

17) 갑 제41호증 36면 흙막이공사 중 '토공' : 풍화암 굴착 및 상차(H=5.0m 이하), 발파암 굴착 및

상차(정밀진동제어발파), 사토운반(풍화암, L=37.2km)